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74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김선교 · 김상훈 · 김위상
김성원 · 최보윤 · 정동만
김은혜 · 구자근 · 최수진
윤상현 · 서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협 공제사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협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협 공제사업에 있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7조의2 신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이 경우 “보험”은 “공제”로, “보험계약자”는 “공제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공제자”로, “보험금”은 “공제금”으로,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로, “보험회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

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2(벌칙)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u><단서 신설></u>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 ----- ----- ----- ----- ----- ----- ----- ----- ----- 다만, <u>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이 경우 “보험”은 “공제”로, “보험계약자”는 “공제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공제자”로, “보험금”은 “공제금”으로,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로, “보험회사”는 “수산업협</u>

② · ③ (생략)

<신설>

동조합중앙회”로 본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7조의2(벌칙)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

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

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